

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근로감독관규정 전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.

대통령 이명박 인

2010년 10월 27일

국무총리 김황식

국무위원
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

●대통령령 제22465호

근로감독관규정 전부개정령

근로감독관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근로감독관규정

제1조(목적) 이 영은 「근로기준법」 제101조에 따라 근로감독관의 자격, 임면(任免), 직무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당연직 근로감독관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은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근로감독관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.

1. 고용노동부의 3급부터 7급까지의 공무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(課) 또는 담당관 소속 공무원
 - 가. 「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(이하 “직제”라 한다) 제10조제3항제29호부터 제3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용평등에 관한 업무
 - 나. 직제 제10조제3항제32호부터 제3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성근로자 보호에 관한 업무
 - 다. 직제 제11조제3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40호부터 제4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노동조합에 관한 업무
 - 라. 직제 제11조제3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노사분규에 관한 업무
 - 마. 직제 제11조제3항제13호, 제15호부터 제18호까지, 제22호 및 제23호에 따른 근로기준에 관한 업무
 - 바. 직제 제11조제3항제14호, 제19호부터 제21호까지 및 제24호에 따른 임금에 관한 업무
 - 사. 직제 제11조제3항제32호부터 제3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업보건에 관한 업무
 - 아. 직제 제11조제3항제37호부터 제3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업안전에 관한 업무
 2. 지방고용노동청의 4급부터 7급까지의 공무원 중 근로개선지도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과 소속 공무원
 3. 지방고용노동청 지청 및 출장소의 장과 그에 소속된 4급부터 7급까지의 공무원 중 근로개선지도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과 소속 공무원
- ② 제1항의 경우 일반직 6급 또는 7급 공무원 중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1년 미만인 사람은 근무경력이 1년이 되는 날부터 근로감독관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.

③ 제1항에 따른 근로감독관이 근로감독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거나, 직무 범위와 관계없이 「국가공무원법」 제61조·제65조 및 제66조를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근로감독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.

1. 강등·정직 처분을 받은 경우: 1년 6개월
2. 감봉 처분을 받은 경우: 1년
3. 견책 처분을 받은 경우: 6개월

제3조(임명직 근로감독관) 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은 그 소속 공무원 중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공무원만으로 근로감독관을 충원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일반직 6급 또는 7급 공무원으로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1년 미만인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근로감독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.

1.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
2. 제5조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으로 지명받아 근로감독관의 업무를 보조한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
- ②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은 고용노동부 또는 지방고용노동청·지청 및 출장소(이하 “지방고용노동관서”라 한다)에 노동 관계 법령 위반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한시적인 전담반을 구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감독관이 될 수 있는 공무원 외에 3급부터 7급까지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근로감독관 경력이 있는 사람을 근로감독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.

제4조(근로감독관 임명의 해제) ①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감독관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거나 제3조제1항에 따라 근로감독관으로 임명된 사람이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과 또는 담당관 소속으로 근무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근로감독관의 임명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.

-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근로감독관으로 임명된 사람은 해당 전담반이 해체되었을 때에는 근로감독관의 임명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.
- ③ 고용노동부장관과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감독관이 근로감독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거나, 직무 범위와 관계없이 「국가공무원법」 제61조·제65조 및 제66조를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근로감독관의 임명을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해당 처분을 받은 날부터 근로감독관의 직무 수행 제한 기간에 관하여는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.
- ④ 고용노동부장관과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감독관이 근로감독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2년 이내에 두 번 이상의 경고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근로감독관의 임명을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하고, 해당 근로감독관은 임명이 해제된 날부터 6개월 동안 근로감독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.

제5조(사법경찰리 지명의 추천 등)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8급 또는 9급 공무원 중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근로개선지도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배치하고, 「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해당 공무원을 추천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으로 지명받은 후 근로감독관의 수사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.

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명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명서를 회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.

1. 지명 당시의 담당 부서에서 근무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2. 근로감독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거나 최근 2년 이내에 두 번 이상의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

제6조(활동비 지급) 근로감독관과 근로감독관을 보조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한다.

제7조(증표) ① 고용노동부장관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근로감독관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발급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증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◇개정이유

「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(대통령령 제22269호, 2010. 7. 12. 공포·시행)에서 하부조직의 분장사항과 명칭을 일부 조정함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 근로감독관이 되는 과 또는 담당관의 업무를 이에 맞추어 규정하고, 당연직 근로감독관의 업무 범위에 비정규직 근로자와 여성근로자 보호, 최저임금 등의 임금 및 산업보건에 관한 업무를 추가하며, 근로감독 업무가 일정기간 제한되는 징계처분은 근로감독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로 한정하고,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는 한편,

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,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.

◇주요내용

가. 당연직 근로감독관의 범위 조정(안 제2조제1항제1호)

- 1) 현행 규정은 노동환경 변화로 근로감독관의 업무가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감독관을 운영하는 과가 노사조정, 노동조합, 근로기준, 산업안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4개 과로 한정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음.

- 2)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에 관한 업무, 여성근로자 보호에 관한 업무, 최저임금 등 임금에 관한 업무 및 산업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과를 당연직 근로감독관의 대상으로 추가함.
 - 3)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및 고용차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취약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고, 최저임금 이행 지도 등 임금에 관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- 나. 근로감독관 직무수행의 제한사유 조정 및 신설된 징계의 종류인 강등 처분의 추가(안 제2조제3항)
- 1) 근로감독 업무와 무관하게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감독관을 근로감독관 업무에서 배제할 경우 근로감독관이 부족하여 근로감독 업무를 통한 근로자 권리 보호가 충분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고, 「국가공무원법」에 규정된 징계의 종류인 강등에 대한 규정이 미비된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.
 - 2) 근로감독관이 근로감독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 일정 기간 근로감독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하고, 근로감독 업무가 제한되는 징계의 종류에 강등 처분을 신설하며, 징계처분별 근로감독 업무의 제한 기간을 단축함.
 - 3) 근로감독관 자원 부족이 해결되어 근로감독 업무의 원활한 집행이 가능하고, 법령 간 징계처분의 불일치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됨. <법제처 제공>

부 령

●기획재정부령 제210호

경제총조사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10년 10월 27일

기획재정부장관 인

경제총조사 규칙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통계법」 제17조에 따라 지정통계로 지정된 경제총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“경제총조사”란 정부가 특정한 시점에 대한민국 영토에서 제3조 각 호의 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체의 산업구조 및 경영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.
- 2. “사업체”란 일정한 물리적 장소에서 단일 또는 주된 경제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를 구성하는 부분을 말한다.
- 3. “조사구”(調査區)란 조사대상 지역을 통계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나눈 조사구역 단위를 말한다.